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7
----------	-----

제출년월일 : 2007. 11. .

제 출 자 : 속초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을 근거로 제정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내용중 행정자치부 법령해석을 참고로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자원봉사단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범위 명확화 (안 제11조)

- 1)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법령해석 질의 및 답변내용에 따른 행정적 지원외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내용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불임

- 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4쪽)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및 제6조 (4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 (2007. 10. 23 ~ 11.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 해당없음
- 3) 행정자치부 질의 및 답변내역 : 불임 (5 ~ 6쪽)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행정자치부 질의 및 답변내역

접수번호 H046484

신청일 06.10.24

종료일 06.10.31

제 목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문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시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단체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 코자 하나 의견이 상충되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을 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은 행정자치부와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의한 지원 사업비를 시군·구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 용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①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답 변

평소 자원봉사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귀택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회시합니다.

시군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의 지원여부에 대하여 비록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자원봉사단체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한하여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구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재정지원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며 타 법령에 의한 지원근거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보여 집니다. 기타문의는 행정자치부

주민참여팀(02-2100-386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자	박정서	전화번호	2100-3718	이메일	pjs@mogaha.go.kr
-----	-----	------	-----------	-----	------------------